

---

# 2018년 6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18.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 2018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3.24.(금) 10:00 ~ 12:10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배 석 :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 1건
  - (2018-19)창작연극 지원시설 설계공모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 (2018-20) 「(주)○○산업 성수공장 철거·이전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2018-21)종로소방서 관내 지하철 역사 소방감리보고서, T.A.B 보고서, 종합정밀점검 결과(최소 2년치 이상) 등
  - (2018-22)구로소방서 관내 신축 고층건축물 대상 인허가, 동의한 자료 및 준공허가 승인 상세자료 등('13.1. ~ '18.3.)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부분인용
  - 기각
  - 기각
  - 기각

【 의안번호 2018-19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창작연극 지원시설 설계공모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김지미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권혜진 위원님, 안희철 위원님, 한상희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 1건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주심위원님들께서는 해당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19호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팀장>

- 도시공간개선단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19호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창작연극 지원시설 설계공모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에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국토부 지침 제12조, 그리고 제13조에 따라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한 개별채점포 또는 투표내역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팀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이의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 안전의 주 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당선작과 입상 공모(안)은 공개가 된 것이고, 비공개된 부분이 개별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한 평가사유서하고 평가점수 맞습니까?

<○○○ 팀장>

○ 심사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됐고요.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각 심사위원이 어느 작품에 투표했는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개별 투표내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정보로 판단됩니다.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어서 비공개했다라고 하면 5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봐도 비공개 사유가 5호인지, 정성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된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1호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공모자체는 종료가 된 사안이죠?

<○○○ 팀장>

○ 종료가 됐습니다.

<○○○ 위원>

○ 5호의 사안은 의사결정과정 중이라는 사유는 공모가 진행 중일 때는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 5호를 보더라도 의사결정과정의 종료되면 통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건은 종료된 사안이라서 만약에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시면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 팀장>

- 해당 의사결정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 2003.8.21 선고 2002두12946 판례를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시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분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 위원>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쭉보시죠.

<○○○ 팀장>

- 이분이 원하는 것은 각 심사위원이 56개 작품 중에서 어떤 것에 투표했는지를 원하는 겁니다.

<○○○ 위원>

- 심사평도 다 공개했습니까?

<○○○ 팀장>

- 그것은 홈페이지에 다 했습니다.

<○○○ 위원>

-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평도 다,

<○○○ 팀장>

○ 네, 했습니다.

<○○○ 위원>

○ 심사절차를 보면 1차 심사를 통해서 5작을 선정하고, 그 5작을 대상으로 다시 당선작과 입선작을 고르는 심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원하는 것은 56개 응모작 전체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겁니까?

<○○○ 팀장>

○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마다 어느 작품을 선택했는지 공개해 달라는 그겁니다.

<○○○ 위원>

○ 5명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각자 5작을 선정을 하고, 그 5작을 가지고 다시 2차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이 각 5작을 선정하는 과정의 투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라는 말씀이지요?

<○○○ 팀장>

○ 네, 그겁니다.

<○○○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최종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 5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네. 회의자료 1쪽에 보면 1호 법령상 비밀 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호에 의해서 비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팀장〉

- 1호도 포함이 되고 5호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법률 내에서 규칙 내용에 이렇게 개별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야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1호의 법령상 비밀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이나 국토부 고시나 이런 것을 봐도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이것이 왜 1호에 해당하는가 의아했습니다.
- 그리고 부분공개 결정한 것을 봐도 몇 호에 의해서 비공개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먼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5호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준해서 비공개한 것으로 정리를 일단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팀장〉

- 네.

〈○○○ 위원〉

- 이 심사위원회는 요 건의 심사를 위해서만 구성된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이런 식의 심사가 자주 일어납니까?

<○○○ 팀장>

○ 설계공모가 1년이면 한 20여 건 가까이 되는데 그 때마다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 위원>

○ 심사위원풀은 많습니까?

<○○○ 팀장>

○ 네.

<○○○ 위원>

○ 심사위원의 실명은 공개가 됐습니까?

<○○○ 팀장>

○ 네, 실명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위원>

○ 당선작에 대한 각 심사위원의 실명과 그 심사위원의 심사평은 공개가 됐다는 것이죠?

<○○○ 팀장>

- 당선작에 대한 전체 심사평이 공개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총평은 따로 누가 작성합니까?

<○○○ 팀장>

- 심사위원장이 총평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요약해서 두세 줄 정도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위원>

-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설계개요, 전체 응모작품수하고 입상자 현황, 입상작품, 당해작품의 설계자, 회사이름, 참여 심사위원의 실명과 총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각 심사위원이 수기로 쓴 심사평은 공개가 안 된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이분은 심사위원 개인이 어느 작품에 투표를 했는지를 원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올려달라면 저희들이 올려줄 수도 있고,
-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로 국회의원선거에 각 개인이 누구한테

투표한 것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달라는 이 얘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 위원>

○ 선거는 비밀투표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 위원>

○ 평가점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 팀장>

○ 평가점수는 없습니다.

<○○○ 위원>

○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가점수는 정성평가니까 그런 정보는 부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사유서인데 5작품에 대한 각 평가사유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주셨던 56개의 첫 응모작 전체에 대한 점수표를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팀장>

○ 그것을 청구한 겁니다. 제가 이분하고 두 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이 응모포기각서를 낸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팀장>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 사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 설계공모 참가자가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 등에 요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참가자인 겁니까? 공모 포기를 했으면 참가자가 아닌 겁니까?

<○○○ 팀장>

- 참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 관련 규정을 보시면 지침이 있는데, ‘심사위원별 심사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더라도 판단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 팀장>

- 이것은 심사위원회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 위원>

- 제14조에 보면 발주기관 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사유서가 아까 말씀하신 총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총평은 개별평가사유서를 정리한 또 다른 정보로 새로이 생성된 정보이고, 사

실은 여기에 나오는 평가사유서는 저는 원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평가사유로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 팀장>

- 평가사유서는 저희가 총평으로 조합을 해서 공개를 한 것이고요. 청구인은 심사위원의 개별적인 투표결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

- 제 의견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평가사유서를 제14조에 나와 있는 평가사유서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 지침에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개별평가사유서, 실명까지 다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좀 더 강한 정도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 위원>

- 평가사유서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평가사유서가 있고 개별적으로 생성된 개인별 사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대상이 되는 평가사유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팀장>

-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공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위원〉

-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설계공모 심사평’이라고 각 심사위원 분들이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심사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기는 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각 작품의 설계공모에 대한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도 공개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심사평 역시 평가사유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 두 번째로 평가방법에 따라서는 1번 작품은 5점, 2번 작품은 3점, 3번 작품은 4점, 이런 것도 평가점수지만, 작품 중 좋은 것 몇 개 정도 투표해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평가점수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각각의 좋은 작품으로 동그라미 친 것을 합쳐서 가장 많이 얻은 것을 1등작으로 선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평가점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침 제14조에 평가점수에 아까 그 투표결과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개로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 팀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누가 투표한 것까지 다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 위원〉

- 그 투표한 내역이 평가점수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 위원〉

- 자료에 보면 지금 56개 응모작을 번호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될 경우에 22번, 28번, 30번이 어떤 작품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위원>

- 1번 작품은 누가 출품한 것인지 바깥에서 알 수 있습니까?

<○○○ 팀장>

- 일반인들은 모르고 출품한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공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팀장>

-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출품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 위원>

- 출품한 사람이 아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한 제3자가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 위원>

- 출품한 사람은 자기 작품의 번호는 알지만, 다른 사람 작품번호는 모를 것 아닙니까?

<○○○ 팀장>

- 그렇죠.

<○○○ 위원>

- 그러니까 각각 번호에 해당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까지는 모르는 것 아닙

니까?

<○○○ 팀장>

- 그것은 모르지만 출품한 사람들은 다 알죠.

<○○○ 위원>

- 결국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하셨기 때문에 위원별 1차 심사자료, 집계표, 위원별 평가사유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공개될 경우에 이 결과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가, 이후에 심사위원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표명을 자유롭게 하거나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 팀장>

-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라든가 국토부까지 이렇게 개별 의사진행까지 공개한 데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 위원>

- 뭐든지 처음은 있는 것이니까요.

<○○○ 팀장>

-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서울시에 심사하러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선택했는지를 출품한 본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느 심사위원한테 연락하겠습니까.



<○○○ 위원>

- 심사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 팀장>

- 저희는 국토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 그것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라고 고지했던 것인데,

<○○○ 위원>

- 그것은 서울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해석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원>

- 지침 제12조제2항을 보면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이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 팀장>

- 네, 받았을 겁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을 겁니다.

<○○○ 위원>

-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이것에 동의를 해줄 때 제 이름과 제가 심사한 과정, 제가 심사한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동의해준 것 같습니다.

<○○○ 팀장>

- 그런데 과정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투

표했다는 이런 것까지 한다고,

〈○○○ 위원〉

- 총괄결과 말고 관련 규정에 ‘심사위원별’이라고 되어 있으니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서죠.

〈○○○ 위원〉

- 저는 심사위원들이 본인이 심사한 결과가 공개된다는 것을 알고 사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심사위원별 인적사항을 지우고 공개하냐 마냐가 고민인 것인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를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 동의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팀장〉

-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 지침상에 있는 것만 홈페이지에 하고 그 나머지는 공개 못하겠노라’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을 보시면 〈제5절 설계공모안 심사〉 아항을 보면 심사위원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전반에 대한 총평도 있고,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평도 공개하고 각각의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것이 지금 명문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 팀장〉

- 결과에 대한 심사 총평이라든가 심사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의 여부는,

<○○○ 위원>

○ 심사위원 5명의 실명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 팀장>

○ 공개됩니다.

<○○○ 위원>

○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주신 것처럼 심사위원 이름을 지우고 공개된다면 심사위원 5명 중에 누가 이렇게 투표했는지는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것은 알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러면 이 상태로 공개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팀장>

○ 그것은 공개해도 되죠.

<○○○ 위원>

○ 그러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팀장>

-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 청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부분공개인 것이죠.

<○○○ 팀장>

- 그렇죠.

<○○○ 위원>

-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심사평은 공개하도록 특별히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심사평은 공개하고, 1차 심사결과 5작품을 선정해서 2차 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총괄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까지가 공개되면 차후에 혹시라도 자유로운 의사발언이나 심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심사위원의 성명은 지운 채로 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도 동의는 하는데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평 손으로 쓴 것은 이름 지우는 것이 필적이 남아있어서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필적까지 추적을 할까요?

<○○○ 위원>

- 필적이 워낙 차이가 나서 웬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따로 타이핑을 한다든지 해서 가공해서 공개할 수는 있을까요?

<○○○ 위원>

-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방법까지 포함 해서 다른 분들 의견 주시죠.

<○○○ 위원>

- 저는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요. 채점표는 이름을 지우고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정리합니다.

<○○○ 위원>

- 평가서는 성명을 지우지 않고 전체공개로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 위원>

- 네.

<○○○ 위원>

- 심사평이라고 수기로 쓴 것은 등수를 이미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실명을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심사평은 1등부터 5등까지 정해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쓴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저도 아까 개별적으로 투표한 것은 이름을 비공개하고요, 설계공모 심사평에 대해서는 그냥 다 공개를 하고 총점 매긴 것도 전체공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 세 종류 다 공개를 하는데 개별로 투표한 표만 이름을 지우는 것이죠.

<○○○ 위원>

○ 그렇죠. 그럼 심사평의 이름 부분에 대해서 ○ 위원님은,

<○○○ 위원>

○ 저는 이름을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공개된 정보 중에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설계공모 심사평, 이 문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실명까지 포함한 전체공개이고요. 1차 심사라고 되어 있는 이 5작을 선정해서 동그라미 치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실명은 가리고 부분공개하고, 1차 심사결과라고 나와 있는 총괄표에 대해서는 전체공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그러면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에 4명이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19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8-20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주)○○산업 성수공장 철거·이전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2018-20호 공공개발센터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팀장〉

○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센터 ○○○입니다.

〈○○○ 주무관〉

○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는 공공개발센터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20호 공공개발센터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주)○○산업 성수공장 철거·이전관련 자문회의 결



과 보고 결재문서에 대해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 현재 2차 협약 협상이 진행 중으로 자문결과 등이 공개될 경우 효과적 협상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를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 환경에 관한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하였고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팀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팀장>

- 네.

<○○○ 위원>

-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효과적 협상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팀장>

- 이것은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숲에 잘 아시다시피 ○ ○ 공장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지역의 개발을 이끈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대해서 15만 명 정도가 공장이전에 서명할 정도

로 상당히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09년부터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협상이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 정말 시 정책상 강하게 추진하고 협상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2022년에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서울시, 성동구, ○○○○, 그리고 ○○까지 4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은 토지소유지이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 그런데 1차 협약 때는 날짜만 2022년 6월까지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2차 협약 때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협약은 맺었지만 나갈지 말지가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협약 할 때는 정말 계약서 수준의 이행담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문결과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공개됐을 시에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략 부분이 많이 노출될 수 있어서 비공개 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주무관〉

-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사전협상제도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민간의 토지를 고도로 개발하는 도시계획틀인데, '09년도에 사전협상 대상지역으로 선정돼서 협상을 하다가 '13년도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50층 이상의 건물들은 준주거지역 이상의 위계가 있는 곳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한전 부지에 110층짜리 건물을 올리려고 했던 부지가 당초에는 이 부지였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쪽이 개발이 안 되고 '13년도에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한전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장 부지로 있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소외감도 있고, 또 소음, 진동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보니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전을 추진해서 가까스로 작년 10월 17일 날 1차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 금방 팀장님이 설명했다시피 2차 협약은 계약서 수준의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다보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지금 이 2차 협약이 4월 정도에,

<○○○ 팀장>

- 네. 당초에 1차 협약 때는 원래 1월 달에 2차 협약 예정이었는데 2차 협약은 계약서 수준에 준하게 추진하다 보니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지금은 협약서를 서로 주고 받고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고 한 4월이나 5월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협약이 종료되면 공개는 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 팀장>

- 그것도 고려를 해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센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주장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자문 받았던 내용들이 빠질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공개됐을 시에는 반대로 저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니들은 서울시에서 협상을 왜 이렇게 못했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아예 향후에도 비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진짜 철거가 끝난 이후 2022년 10월이나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 위원>

- 그것은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이게 공개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 팀장>

- 말씀드렸다시피 유불리가 있습니다. 협상이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좋습니다. 그런데 ○○는 엄청 안 좋은 것이죠.
-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대로 안 됐을 시에 만약에 계약이 난 다음부터는 또 저희가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저희가 봤을 때도 ○○가 워낙 반발이 심하고, 만약에 거기서 또 ‘나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1차 협약도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혹시 청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팀장>

- 지역주민일 수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 위원>

-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십니까?

<○○○ 위원>

- 특별하게 저는 질문 없습니다.

〈○○○ 위원〉

- 저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질문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공개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 위원〉

- 저는 ○○○○이 왜 끼어들었나,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하려고 했더니만 답이 나와 가지고요.

〈○○○ 팀장〉

- ○○○○은 토지주고요, ○○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의견 정리해 주시죠.

〈○○○ 위원〉

- 제 의견은 실제 이것이 내부검토과정에서 효과적 협상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하셨던 대로 5호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에 4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2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8-21 청구인 이의신청, 2018-22 사전심의 】

안건명

- 종로소방서 관내 지하철 역사 소방감리보고서, T.A.B보고서, 종합정밀점검 결과(최소 2년치 이상) 등(2018-21)
- 구로소방서 관내 신축 고층건축물 대상 인허가, 동의한 자료 및 준공허가 승인 상세자료 등( ' 13.1. ~ ' 18.3.)(2018-22)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종로소방서, 구로소방서 소관 의안번호 제2018-21호 이의신청 건, 제 2018-22호 사전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과장님 되시죠?

<○○○ 과장>

- 네.

<○○○ 위원>

-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 종로소방서 예방과장 ○○○입니다.

〈○○○ 과장〉

○ 구로소방서 예방과장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종로소방서, 구로소방서 소관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21호 종로소방서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관내 제연설비 관련 3종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일부 자료는 부존재정보에 해당하며, 관내 역사 종합정밀점검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 또한 의안번호 제2018-22호 구로소방서 소관 사전심의 건의 경우는 동일 청구인이 요청한 제연설비 관련 4종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에 따른 사익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 요청하여 본 심의회에 사전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과장님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과장>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의 신청 건인 종로소방서 건부터 ○○○ 위원님께서 먼저 진행을 해 주시죠.

<○○○ 위원>

○ 우선 법령부터 봅시다. 비공개 사유가 제9조제1항제2호를 들었는데요 2호가 국가보안, 국방통일, 외교관계, 국가이익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사회질서 내지는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 이지 국가보안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과장>

○ 저희가 드린 것은 3호,

<○○○ 위원>

○ 3호는 맞겠죠. 그런데 2호는 빼는 것이,

<○○○ 과장>

○ 네, 3호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 여기에 보니까 2호, 3호 그렇게 적혀 있어서요. 지금 비공개대상이 되는 문건 들이 전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서식입니다. 특히 종

로 쪽이 그런데요, 이 별지서식에 적혀있는 내용을 점검한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안전문제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

- 청구인이 1, 2, 3항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3항 종합정밀점검보고서 그 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위원>

- 네. 부존재하는 서류가 없는 것은 공개할 이유가 없으니 더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밀점검보고서는 사실 고시에 나와 있는 별지서식에 체크만 한 것인데 이게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과장>

- 일단은 종합정밀점검보고서는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내용으로 생산부서는 도시철도공사가 되겠죠. 저희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봐서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 위원>

- 정보공개는 누가 생산했냐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생산은 어디서 했던 지금 가지고 계시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내용이 질서유지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고, 단순히 어떤 항목들이 충족되었느냐만 체크된 것 같습니다.

<○○○ 과장>

- 제연설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지하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국가테러하고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제연설계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배출하고 막아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설비인데, 만약에 유사시 이 제연설비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테러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되면 안 되고,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 도면과 관련된 것 같으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과장>

- 내용을 보면 종합정밀보고서를 달라는 것이 있고, 감리보고서와 T.A.B보고서도 거실제연설비에 포함해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중이용시설인 지리정보나 세부구조에 대한 내용은 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설비와 관련된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상의 공법 등 각 회사의 경영상·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구인은 지금 몇 개 소방서에 똑같은 내용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공익목적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 위원>

- 지금 비공개 사유로 ‘다중이용시설의 지리정보 세부구조에 대한 내용은 테러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어떤 설비가 있느냐

나 없느냐, 작동되느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공간정보나 지리정보, 구조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테러범이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것일 텐데, ‘어디’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1호선 종각역 안에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 작동하느냐, 그것만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과장>

- 종합정밀점검표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연설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감지기라든지 작동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원격 조정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제연팬의 위치,

<○○○ 위원>

- 예컨대 어느 서류에 몇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파일이 100메가가 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파일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 주무관>

- 5호선 서대문역사 점검표 중에 25호가 각 시설별 제연설비점검표입니다.

<○○○ 위원>

- 25호면 pdf로 34쪽인 것 같습니다. 거실제연설비 종합정밀점검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주무관>

-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배출기나 송풍기 입구에 독가스나 또는 이물질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전철역사 전체로 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과장>

- 팬의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지하 2층 환기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그리고 이 도면에는 없지만 일괄 배출하는 시스템인지, 집어넣고 빠져나오는 이런 공조시스템인지, 기존 공조설비와 겸용으로 하는 것인지 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만약에 테러를 하자면 어떤 지점에 가스 한 통만 터트리면 전체로 퍼지게 되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 과장>

- 그리고 지하철 역사는 우리 규정에 대테러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 저는 구로소방서 쪽 담당인데요, 같은 것이니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소방서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자료가 많으셔서 비공개할 자료도 많으신데, 저는 사실 테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면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작동유무 정도 점검한 것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종합정밀점검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도면이 아님에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리보고서는 어떤가요? 저희가 하나하나 문서마다 쪼개서 봐야 되고, 또 정확히 하자면 그 문서 안에서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공개하고 비공개 할 부분도 가려야 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는 통으로 전체적인 취지에서 비공개한 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리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과장>

- 감리보고서나 종합정밀점검보고서나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합니다. 두 보고서 다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특히나 여기서 T.A.B보고서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한 업체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T.A.B보고서 회사에 연락을 하니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리보고서도 종합정밀점검 보고서하고 비슷하게 그 안에도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종합정밀점검보고서는 어쨌든 내용 자체가 종료하고 구로가 동일한 것 같고요. T.A.B보고서가 업체의 기술이 공개되는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테러의 위험 때문에 비공개를 하신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종합정밀점검보고서나 제연설비도면는 대테러 관련된 부분이 더 큰 것 같고, 그럼 T.A.B보고서나 감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입니까?

<○○○ 과장>

- 감리보고서도 종합정밀보고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내용이 디테일하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보고서는 공사 중에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시되고, 똑같이 테러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이 T.A.B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업체가 실험을 하는 기술입니다.

<○○○ 위원>

- T.A.B보고서는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해서 테러로 위해를 끼친다기보다는 특정 업체가 특정기술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테러 위험이라는 나머지 보고서와는 별개의 사유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 과장>

- 네.

<○○○ 위원>

- T.A.B보고서도 제연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다 나와 있거든요.

<○○○ 과장>

- 다 나와 있습니다.

<○○○ 과장>

- 감리보고서나 종합정밀보고서나 거의 같은데, 감리보고서는 시공 중에 한 것이고, 종합정밀보고서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 위원>

- 제연설비도 3호고, 소방감리결과보고도 3호거나 기술력 쪽인 것 같고, T.A.B 보고서는 경영상 비밀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최근에 테러 관련된 범죄자들이 가장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건물구조인데,

사실 건물 보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외지에서 가스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 출입구를 알려고 도면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보고서는 굳이 도면이 붙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지하를 거쳐 나오는 시스템인지, 따로따로 배출되는 시스템인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나 풍도의 크기, 풍량의 양에 따라서 살포해야 되는 최초의 양을 조정할 수 있고, 배출이 되는 지, 쌓이는 것인지, 이런 것이 꼼꼼하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 청구인 입장을 본다면 종합보고서 중에서 제연설비와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보고서들은 사실 공개의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 과장>

- 그렇죠.

<○○○ 위원>

- 미루어 추측하자면 그렇죠.

<○○○ 위원>

- 그럼 청구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정말 하나를 원하시면,

<○○○ 과장>

- 제연설비입니다.

<○○○ 위원>

- 구로 관련해서 자료가 참 많네요. 제연설비 대상 건축허가 동의현황 있지 않



습니까? 이것은 청구인이 그렇게 원하는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원합니까?

〈○○○ 과장〉

- 저희들이 언제 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의 현황 정도는 드릴 예정인데, 이분이 요구한 것은 실은 건축물에 있는 제연설비의 아주 상세한 부분을 다 알고 싶어하는데 대상 건축물들이 중요국가지설물, 대테러 시설물 하고 해서 보안단계로 특별관리 하는 대상들입니다. 현대디큐브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제연설비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사진도 찍고 와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소방서 외에는 없습니까?

〈○○○ 과장〉

- 도시철도공사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 위원〉

-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와 우리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부서, 이 두 가지에 확인할 수 있고,

〈○○○ 과장〉

- 지금 일반건축물 점검을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을 안하고, 허가를 받은 점검업체가 보안구역까지 들어가서 점검후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점검을 했냐 안 했냐 조사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

○ 그 사설업체들은 이런 것을 갖고 있겠네요?

<○○○ 과장>

○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그 업체들은 절대 비공개, 비밀로 하기로 이미,

<○○○ 팀장>

○ 그럼요.

<○○○ 과장>

○ 저희들한테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공서에 접수된 이상 그것은 공공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점검자의 인적사항부터 점검능력, 이 사람의 기술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보통 그런 문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보안점검대상도 되지 않습니까?

<○○○ 과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보안점검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정행위는 없었습니까?

<○○○ 과장>

- 대테러 시설물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시설물이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 비밀이니까 누설하지 마’ 이런 정도의,

<○○○ 과장>

- 점검업체들은 자기들이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점검한 서류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

- 그냥 계약사항으로 비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비공개로 되는 겁니까?

<○○○ 과장>

- 점검을 하는 경우는 사설업체가 하지만 준공공의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점검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을 경우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 때문에 점검업체들이 점검한 것도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

- 관계 법률에 이게 어쨌든 대테러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까?
- 여러 비공개 사유들 중 법령에서 비공개하라고 되어 있으면 가장 쉽게 비공개

가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조항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 과장>

○ 법령에 명시가 없는데요, 테러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보면 2조,

<○○○ 위원>

○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너무 두루뭉실해 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고시나 그런 데서 서식을 지정을 하면서 ‘서식 제5호, 6호, 7호는 비공개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아주 간단해지거든요.

<○○○ 과장>

○ 그렇죠.

<○○○ 팀장>

○ 그런데 거의 기관장의 담당 하에 테러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콕콕 짚어서 기술된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 종합점검표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과 구분할 수는 있습니까? 하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종합점검표에 포함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것은 공개해도 별 상관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가능합니까?

<○○○ 주무관>

○ 이분이 강조하는 제연설비는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마 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충분히 테러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바람

이 이리로 들어간다, 이리로 나온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가스통 하나만 넣으면 전체에 퍼지겠구나' 그런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연설비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설은 소방장비 같은 것은 큰 이상은 없을 겁니다.

〈○○○ 과장〉

-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혀 그분이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위원〉

- 사실 그것은 저희들 판단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법령에 의하면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을 때 그 문서 중에서 비공개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 위원님께서 여쭙보신 것은 과연 이 문서 중에서 대테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는 부분을 페이지마다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게 구분이 된다면 차라리 그런 부분은 그냥 공개를 하고, 대테러 부분은 다 지우고 공개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과장〉

- 저희들도 5년치의 고층건축물 인허가 동의 관련 준공허가 상세자료 전부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명, 승인일, 이 정도는 공개를 해 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제연설비, 도면, 감리보고서, T.A.B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심

의회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

- 종합정밀점검보고서가 한 46쪽 되는데 지금 번호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25번 ‘거실제연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이렇게 되어 있고, 27번 ‘연결송수관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연설비에 관련된 점검표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송수관설비에 대한 점검표는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서 안에서도 구분이 가능하냐를 여쭙보는 겁니다.

<○○○ 과장>

- 사실 구분하면 정보공개를 해도 무방한 것도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습니다. 이분이 요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5년치 이상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많은 분량을 누가 분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개하고, 이것은 비공개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 팀장>

- 하루가 아니라 몇 일을 해야 됩니다.

<○○○ 과장>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 위원>

- 그것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위원>

- 저희도 청구인이 감리보고서 중 ‘제연설비 부분’ 이렇게 정해줬으면 굉장히 마

음 편하게 판단을 해 버리는데 ‘감리보고서 일체’ 이렇게 청구하니까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연설비의 어느 부분이, 또는 제연설비가 아닌 것도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1차 판단은 소방서에서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 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많다 보니 법을 따지면 공개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많은 양을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가 다 추려서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의 취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 팀장〉

- 그리고 1년치에 대해 요청한 것이 아니라 5년치를 해 달라고 기관에 요구하고 있고, 우리 소방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로, 기타 지방도 반복해서 청구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 과장〉

- 이분이 구로소방서 4번 같은 경우에 신도림역 현대백화점 소방감리보고서, T.A.B보고서, 종합정밀점검자료 최소 2년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개의 대상으로 요청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종합정밀점검보고서 중에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5년치를 요청하고 있고, 이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문서함에 한 줄이 다 포함이 되는 분량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선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개인의 업체가 사익을 위해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정보공개 요청이 악용되는 사례인데, 이런 경우는 법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팀장>

- 만약 30년치를 청구한다면 그 30년치를 다 분리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취지에도 안 맞고요.

<○○○ 과장>

- 청구인이 제연설비를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제연설비의 건물현황, 면적, 제연설비업체명, 설치시기 정도는 분명히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본인의 특허 관련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

- 5년치나 되니까 양이 많기는 한데요, 점검하는 게 작년과 올해가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이니 5년치라고 해도 대부분 똑같은 것의 반복일 것 아닙니까?

<○○○ 과장>

- 보고서가 다르니까 별도로 건건이 다 있습니다.

<○○○ 팀장>

- 보고서가 달라서 해마다 점검업체가 다르고,



<○○○ 위원>

- 종합점검표 같은 경우 법령상에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식대로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팀장>

- 그 양식대로 되는데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는 틀립니다.

<○○○ 위원>

- 사적인 부분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구분하는데 그렇게 업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과장>

- 굉장히 많습니다.

<○○○ 과장>

- 많죠. 저희한테 최소 2년 이상 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하철 역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 관할만 15개 대상이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서를 구성하는 포맷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은 것이고, 법령서식 제5호 사항은 공개, 제6호는 비공개로 결정되었다면 작년 것 5호는 비공개, 6호는 공개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원칙론만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몽땅그러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 팀장〉

- 1년치에 대한 5호 서식만 봐도 제연설비에 대해서 알거든요.

〈○○○ 위원〉

- 무슨 취지이신지는 잘 알고요. 그런데 청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희는 정보 공개법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양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 주무관〉

- 이 보고서는 전부 수기로 작성된 종이로 들어옵니다. 보관하는데만 서고 하나가 필요할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시다시피 건 중에서 일부를 제외한다는 것은 그 수작업을 다 해야 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사실 담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 주무관〉

- 알아본 바로는 양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청구가 한 번 들어왔었는데, 1, 2년 정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5년치를, 그리고 사실 지금 서초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의 결정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부분공개로 결정이 된다면 그 업체 쪽에서는 다른 소방서는 10년, 20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할 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이게 보존기간이 얼마이길래,

〈○○○ 팀장〉

- 영구보관입니다.

〈○○○ 과장〉

-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영구이고, 각 소방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건을 하고 보관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계속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을 요구를 해 버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카피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

- 아까 구로소방서 같은 경우 공개하고자 했던 그 문서는 이것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양천소방서에 정보공개 청구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양천에서 이정도로는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도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정보까지는 저희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만든 것입니다.

〈○○○ 과장〉

-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를 했을 때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청구건으로 인하여 업무를 못한 것도 사실 공익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신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보공개 여부의 판단도 소방부서의 주된 업무입니다. 굳이 더더기 업무, 귀찮은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무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는 것이죠.

<○○○ 과장>

- 지금 현재도 매일처럼 정보공개 요청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무관>

- 물론 판단에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저희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특정해서 요청을 한다거나, 시점을 특정해서 사례를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만 이런 식으로 청구한 사안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 어렵네요.

<○○○ 위원>

-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내용을 벗어나서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법의 잘못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공개 심의사항하고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다른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

희들이 부분공개, 전부공개, 기각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쉽사리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 과장>

- 저희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업무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에 위배되잖아요.

<○○○ 위원>

- 과거 유사사례들을 보면 특정 시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특정소방대상물 점검확인서 이런 안전의 경우 대테러 시설과 관계 없으니 사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부분공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산행정심판에서는 지하철역사의 설계도면은 전부 다 비공개로 봤고, 청량리 민자역사도 전부 비공개, 그리고 롯데월드 이것도 약간 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와 예전 구로소방서 안전은 전부 다 비공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엄밀하게 판단하자면 부분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진짜 한 두 개가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3호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사항, 5호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사항, 6호 개인에 관한 사항, 7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 정도가 여러 가지 호 외에 비공개 사항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2호, 3호, 5호, 6호, 7호의 정보가 모든 문서에 혼재되어 있으니 대테러 시설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냥 비공개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줄마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으나, 이렇게 비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정보공개심의회 과거결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지를 봤을

때 유사사례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아서 부분공개를 하거나, 비공개를 하거나 다수가 선택한 의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다만, 17페이지에 ‘구로소방서 소관업무 관련 전반적 정보’ 이렇게 청구한 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위험물 관련과 개인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다투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제가 청구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 중 제가 시민으로서 관심이 가는 내용은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 준공된 아파트에서 소방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제연설비가 아예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설치되지 몇 년 안 됐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설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대테러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적하는 것 중에 이러한 사항이라면 시민들로서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만일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대테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공개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신지.

〈○○○ 과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제연설비가 설치대상인데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 팀장>

- 만약 그렇다면 법률상으로 하면 준공이 안 나간 겁니다.

<○○○ 위원>

- 설치한지 몇 년 안 됐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부분은요?

<○○○ 과장>

-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은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소방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이분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현대디큐브센터 같은 경우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성능 미달해서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어놓은 것이 맞다라는 논리를 소방기술사학회에서 현재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데이터를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청구가 들어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살펴보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취지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직원 의견도 들어보니 '그러면 사람을 추가채용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위원>

-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공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공표 쪽으로 가신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과장>

- 지금도 어떤 시설이 좀 불량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대상업체에 방문해서 관계자와 테스트를 해 볼 수도 있고, 또 저희 소방서에도 찾아와서 민원도 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테스트한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총괄보고서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방시설점검 인력배치 확인신청서를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것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과장>

- 종합정밀점검보고서를 부분공개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비공개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에 한 건에 대해서 방대한 분량이 있는데 부분공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는 맞지만 방대한 분량들을 몇 년치를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

- 소방서에서 구분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 팀장>

-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50년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합니까?



<○○○ 위원>

-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법을 개정하라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 주무관>

- 그런 취지라면 방대한 자료에 비적합 부분을 다 가린다면 공개부분에 청구인이 알 정보도 거의 없을 뿐더러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작업을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안전한지, 이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과장>

-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공개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 실시결과보고서가 맨 앞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한 페이지에도 소재지 있고, 명칭이 있고, 용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의 정보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소방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소방서에서 미리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간편하게 안심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구인이 이런 식의 청구를 하지 않고 2017년도 경북공역에 대한 종합정밀점검보고서를 청구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문서 하나하나를 다 떼어서 살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죠. 아마 결정이 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역에 대한 청구가 또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다 묶어서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문제는 건건이 나누어서 청구했을 때는 ‘비공개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 라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쨌든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누어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전체 비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 공무원들의 업무의 과중을 이유로 해서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거나 청구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결정이 가능한데, 명문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청구인의 취지대로 하나하나를 나누면 오늘 안에도 다 못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구인의 이 청구는 사실은 권리남용이라고 보여진다는 말이죠.

〈○○○ 위원〉

-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청구한 청구취지는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은 또 맞습니다.

-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공개 사유가 혼재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서의 가부는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일단 이 상태의 청구에는 비공개를 하고, 대신 청구인에게 진짜로 알고 싶은 특정 장소, 전례에 나와 있듯이 홍익대학교와 같은 어떤 역사, 어떤 하나의 건물을 특정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궁금한 사항을 나누어서 청구하면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권고를 같이 내리는 것은 어떠십니까?

〈○○○ 과장〉

- 저희도 지금까지 개별적인 사안부분은 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처음입니다.

〈○○○ 위원〉

- 예를 들어서 2017년 종각역 점검표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지금 여기서 따지면 됩니다.

〈○○○ 위원〉

- 대법원 판례 2004두2783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에 따르면 이 청구인이 소방서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를 했거나 이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해서,

〈○○○ 위원〉

-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명한 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 위원〉

- 결정 난 법리를 적용 못할 것은 아니죠.

〈○○○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권리남용이라고 비공개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5년치 전체를 놓고 어느 부분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나누는 방식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 그러면 비공개 사유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대신에 청구인에게는 하나씩 청구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을 판단을 해 주겠다고 전달해 보시고, 그렇게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소방서에서도 나누어서 부분공개 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과장〉

- 하나하나씩의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도면이라든지 개인 성함이나 점검자, 기술자격증 이런 공개 불가능한 부분을 가리고 복사를 해 줍니다.

〈○○○ 위원〉

-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일단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

은 제연설비와 관련된 것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보고서나 문건은 전부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우리의 의결을 좀 늦춰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제연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비공개로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한다. 다만, 지금 안전에 제시된 자료의 성격상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기일을 연기해서 조금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는 있다.

<○○○ 주무관>

- 재심의를 한다는 얘기인지, 담당부서에서 분류를 한다는 말씀인지요?

<○○○ 위원>

-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분류를 해야죠. 우리 의결 자체를 연기하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판단을 하되 그 분류는 저희들이 한다.

<○○○ 위원>

- 그럼 재심의죠.

<○○○ 주무관>

- 제연설비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 네, 제연설비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하는데 어떤 것이 제연설비와 관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위원님, 이 건이 처리기한이 있어서 단시일 내에 다시 심의하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을 것 같고요.

〈○○○ 위원〉

- 제 의견이 다수의견이면 또 다시 논의합시다.

〈○○○ 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가 혼재되어 있어서 비공개하는 것에 ○○○ 위원장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연설비와 관련한 시민 안전과 관련된 공익과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혼재되어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쪽으로 작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전공개라든지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 드립니다.

〈○○○ 위원〉

- 저도 이 건은 2호에 국가안전보장, 3호에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정보, 5호에 검사, 시험, 규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사항, 6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7호에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전체 비공개로 하고, 추가로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비공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 위원님은 말씀하신 그 의견은 유지하시는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

○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과 사전심의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21호, 22호는 기각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